# 연구 윤리 개요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사회의학교실

구 영 모

## Good Research Practice

Young-Mo Koo, Ph.D., CIP

University of Ulsan College of Medic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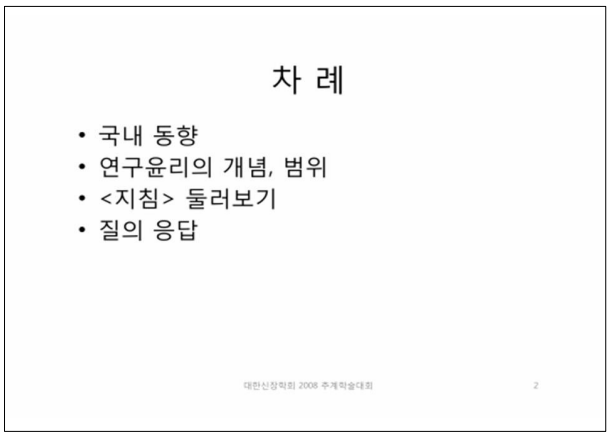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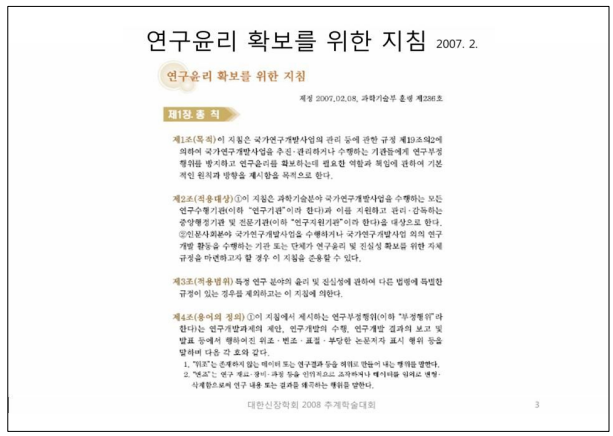







# 의편협 가이드라인 2008. 1.






# 연구윤리 = 연구진실성 확보

❖ **본 지침의 적용 범위**

○ 이러한 광범위한 연구윤리 분야 중, 본 지침은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정확성과 객관성의 유지 등 연구진실성 확보에 관한 내용을 주로 담고 있으며,

– 생명윤리, 연구비의 적정 사용, 연구실 안전 등 다른 연구윤리 분야는 아래의 표와 같이 해당 관련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 연구윤리 범위 | 관련 주요 규정 | 주관기관 |
|---|---|---|
| 연구의 진실성 유지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 과학기술부 |
| 특정연구분야의 윤리규범 준수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 보건복지부 |
| 연구비의 적정 사용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과학기술부 |
| 합리적인 연구실 문화 조성 | – | – |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 과학기술부 |
| 과학기술인의 사회적 책임 | 과학기술인 헌장 |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



# 연구윤리의 범위

- 과학 연구에서의 진실성
- 논문저자 표시 등 공로배분의 공정성
- 연구실 문화의 민주성
- 연구대상이나 연구방법에서의 윤리성
- 과학자의 사회적 책임성



# 연구윤리의 각 유형과 연구진실성간 관련성

| 연구윤리 유형 | 관련성 | 비 고 |
|---|---|---|
| 논문저자 표시 등 공로배분의 공정성 | ○ | 논문저자를 미끼로 동료평가시 위조, 변조, 표절 등 부정행위 빈번 가능 |
| 연구실 문화의 민주성 | ○ | 합리적이고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부족한 연구실에서 강압 또는 자의에 의한 부정행위 가능성 높음 |
| 특정 연구대상이나 연구방법에서의 윤리성 | | 특정분야 연구수행(ex:인간복제)의 윤리성 문제는 연구진실성과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음 |
| 과학자의 사회적 책임성 | △ | 일부 관련이 있으나, 정직성과 진실성이 연구자에게만 요구되는 사회적 책무는 아님 |



# Research Integrity

- 연구진실성이란 연구수행 및 결과 도출에 있어 부주의나 잘못된 지식 등으로 인한 비의도적인 오류나, 위조·변조·표절 등 의도적인 부정행위가 개입 되지 않고 객관성과 정확성이 확보된 것을 의미하며
- 더 넓게 파악하면 차후에 연구진실성을 증명할 수 있도록 연구과정에서 발견하거나 도출한 각종 아이디어, 연구방법, 데이터 및 현상들에 대해 정확하고 자세히 기록하고 이를 일정기간 동안 충실히 보관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 <지침> 제4조 연구부정행위

- 위조
- 변조
- 표절
-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 부정행위 조사 방해
- 제보자 보복

» 위조와 변조의 차이(줄기세포연구 논문조작사건을 사례로)

➢ 당초 존재하지 않았던 맞춤형 배아복제 줄기세포를 마치 수립에 성공한 것처럼 논문을 작성한 것은 위조
➢ 배반포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실제로 사용된 난자 273개를 185개로 축소한 것은 데이터 조작으로서 변조에 해당



⊙ ERIC의 2006 설문조사 조사(정동수, 2006) 에서도 최근 3년간 논문발표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약 65%가 불이익을 경험한 것을 알 수 있으며, 논문의 저자 배분 문제에 관하여 신진 연구자들의 불만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진실성 검증의 대상이 되는 부정행위의 유형에 적어도 논문에 한하여 서는 저자 배분 문제가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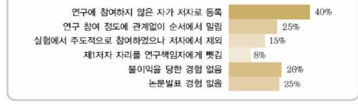




⊙ 공로배분 문제의 조사대상 범위
– 본조사의 대상이 되는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에 관한 제보내용은 기여도에 따른 저자선정 여부가 되어야 하며, 연구자 개인이 기대한 기여도와 실제 인정된 기여도와의 차이는 조사대상이 될 수 없으며 예비조사 단계에서 기각된다.

| 제 보 내 용 | 조상대상 여부 |
|---|---|
| • 아무개는 기여가 **전혀 없다고** 보는데 논문저자에 **포함됨** | 본조사 대상임 |
| • 본인 또는 아무개는 기여가 **있다고** 보는데 논문저자에서 **제외됨** | |
| • 아무개는 기여도가 많아야 20% 정도인데 연구책임자가 40%로 인정함 | 본조사 대상이 아님 (연구부정행위라 보기 어려움) |
| • 본인 또는 아무개는 기여도가 최소 40% 이상인데 연구책임자가 20%정도만 인정함 | |



# <지침> 제5조 연구환경 개선

**제5조(연구 환경 및 연구관리 제도의 개선)** ①연구기관은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연구 환경과 연구실 문화를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연구지원기관은 연구비의 배분 및 관리가 공정하고 투명하며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 관련 기관의 책임 명시

○ 따라서 연구윤리 및 진실성의 확보는 연구자 개인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연구기관과 연구지원기관도 이에 필요한 제도 및 환경 조성의 책임이 있음을 본조에서 명시하고 있다.



# <지침> 제6조 연구윤리 교육

**제6조(연구윤리에 대한 교육)** ①연구기관은 연구자가 연구 수행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 규범, 부정행위의 범위, 부정행위에 대한 대응 방법 및 검증 절차 등에 관하여 소속 연구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연구지원기관은 연구기관의 연구윤리 교육 자료의 개발 등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지침에서 제시된 연구윤리 교육 내용 〉

- 책임있는 연구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준수 사항
- 연구자로서 지양해야할 부정행위 또는 기관 차원에서 규제하는 부정행위 유형
- 부정행위 발생 또는 인지시 신고 등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 부정행위 근절을 위한 기관의 각종 정책 및 진실성 검증 관련 절차 등



# <지침> 제7, 8조 연구진실성 검증체계 구축

**제7조(연구기관의 자체검증체계 마련)** ①연구기관은 이 지침의 내용을 기초로 기관 실정에 적합한 연구진실성 검증에 관한 자체규정을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마련·운영하도록 한다. 다만, 부칙 제2조 이외의 연구기관은 협약 체결시 본 지침에서 제시하는 연구진실성 검증 절차 및 기준에 따른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보고, 후속조치 등에 동의하는 경우 자체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본다.
1. 부정행위의 범위
2. 부정행위 신고 접수 및 조사 등을 담당하는 기구, 부서 또는 책임자
3. 본조사의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 등 검증기구 구성 원칙, 조사 절차 및 기간
4.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의 종류 및 기준
5. 제보자 및 피조사자 보호방안
②자체규정은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외에도 연구기관이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모든 연구개발사업 등을 적용 대상으로 할 수 있다.

## <지침> 제9조 제보자의 권리 보호

○ 제9조(제보자의 권리 보호) ①제보자는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해당 연구기관 또는 연구지원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②제보자는 구술 · 서면 · 전화 · 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 경우 연구기관 및 연구지원기관은 이를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연구기관 및 연구지원기관은 제보자가 부정행위 신고를 이유로 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업무 부과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니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제보자가 신고를 이유로 제3자의 불이익을 받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될 경우 제보자의 소속기관과 함께 제보의 접수와 검증에 관계된 연구기관 및 연구지원기관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⑤제보자는 부정행위의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고자 할 경우 제보 접수기관 또는 관장기관에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⑥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본 지침에서의 내부제보자 보호 관련 규정〉

| 관련 조항 | | 주 요 내 용 |
|---|---|---|
| 제4조 1항 5호 | |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연구부정행위'로 규정 |
| 제7조 1항 5호 | | 연구기관이 자체규정 마련시, 내부제보자 보호 관련 내용을 포함 |
| 제8조 2항 | | 제보자 보호를 소홀히 한 연구기관에 불이익 부여 |
| 제9조 | 2항 | 익명제보 허용 |
| | 3항 | 제보를 이유로 한 불이익 금지 |
| | 4항 | 제보자 정보관개 금지, 제보자 신원 노출시 관계기관 연대 책임 |
| 제18조 3항 | |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기피 관리 부여 |

❖ 제보자 보호수단

◎ 제보자 보호는 크게 3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1) 익명제보의 허용
2) 제보자 신원정보 공개의 절대 금지
3) 제보를 이유로 한 불이익 절대 금지



## <지침> 제10조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 제10조(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①피조사자는 제보 또는 연구기관이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연구기관 및 연구지원기관은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③부정행위에 대한 혐의는 판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1조제3항 각호의 사항이 발생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경우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④피조사자는 부정행위 조사 · 처리절차 및 처리일정 등에 대해 제보접수기관 또는 검증기관에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사례를 통해 살펴본 피조사자의 기준〉

| 구 분 | 역 할 | 조사시 지위 | 비 고 |
|---|---|---|---|
| A교수 | 해당 연구의 책임자 (교신저자 명록) | 피조사자 | 직접 워조를 지시 ·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연구와 직접 관련 있음 |
| B교수 | 해당 연구 자문 (공동저자 명록) | 피조사자 | 부정행위에 가담하지 않고 단순 자문만 하였더라도 공동저자로 명록된 이상 연구와 관련 있음 |
| C교수 | 해당 연구 자문 (공동저자 미명록) | 참고인 | 저자로 명록되지 않았으므로 직접 관련은 있지 않음 |
| D대학원생* | 직접 워조를 수행함 (제1저자) | 피조사자 | 당연히 피조사자임 |
| E대학원생 | 워조를 도와줌 (공동저자 명록) | 피조사자 | 소극적으로 마지못해 도와준 것일지라도 피조사자임 |
| F대학원생 | 워조사실 인지 · 제보 | 제보자/증인 | |
| G대학원생 | D대학원생의 룸메이트 (연구에는 참여 안함) | 참고인 | 매우 가까운 사이임지라도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 한 참고인 |
| H대학원생 | F대학원생으로부터 워조사실 인지하였으나 제보하지 않음 (연구에는 참여치 않음) | 증인 | 직접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한, 부정행위 방조를 가지고 이에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 I대학원생 | 관련 연구에 참여하였으나 부정행위에 가담하지 않았으며 인지하지도 못함(공동저자 명록) | 피조사자 | 일단 연구와 관련 있는 자는 피조사자임 |
| J보조원 | 조사가 시작되자 D대학원생의 요청에 따라 관련자료 파기(연구에는 참여 안함) | 피조사자 | 조사를 방해하는 등 연구 부정에 간접적으로 가담 |



## <지침> 제12조 검증 시효

○ 제12조(진실성 검증 시효) ①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②5년 이전의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피조사자가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후속 연구의 기획 및 연구비의 신청,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에 사용하였을 경우와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시효 기산일 사례

• 만일 2006.8.20일에 접수된 제보의 연구부정행위가 그보다 5년 더 이전인 2001년 4월 중순경에 이루어졌어도 해당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연구결과의 발표월이 2001.9.1일인 경우 시효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다.




• 또한 2001.4.15일에 이루어진 부정행위를 이용한 연구의 발표가 2001.9.20일에 이루어지고, 이를 다시 인용한 연구결과를 2002.5.15일에 발표한 경우 최종 시효기산일은 후자인 2002.5.15일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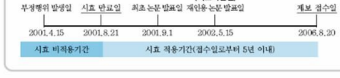

## <지침> 제14조 검증 기간

제14조(진실성 검증 절차) ①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는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단계로 진행하여야 한다.
②각 연구기관은 제1항의 검증 절차 외에도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절차를 포함시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 전체 검증기간

○ 전체적인 검증기간은 신고접수일로부터 최대 7개월이며, 이 범위 내에서 연구기관은 자율적으로 조사기간을 정할 수 있다.

※예비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착수하여야 하며(제15조 4항), 예비조사로부터 판정까지는 6개월 이내 이루어져야 함(제17조 2항)






## <지침> 제 18, 19조 검증 기구

제18조(조사위원회 구성 원칙) ①조사위원회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연구기관의 실정과 부정행위의 규모·범위 등을 고려하여 다른 형태의 검증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조사위원회 또는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검증기구에는 해당 연구 분야의 전문가 및 해당 연구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인이 다음 각 호와 같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구 분야의 전문가 50% 이상
2. 해당 연구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인 20% 이상
③연구기관은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자체검증시스템 구축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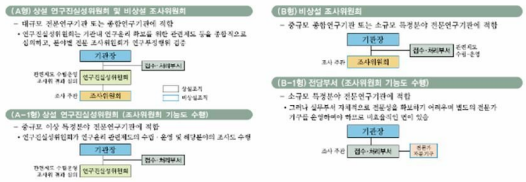




## 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






## 질의 & 응답



## 인용 출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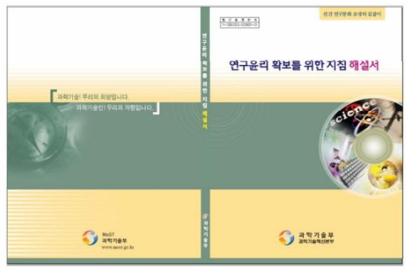

# 과기부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지침)

##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기관들에게 연구윤리 및 진실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① 이 지침은 과학기술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연구수행기관 (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과 이를 지원하고 관리·감독하는 정부부처 및 연구관리전문기관 (이하 "연구지원기관"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② 인문사회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거나 국가연구개발사업 외의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연구윤리 및 진실성 확보를 위한 자체규정을 마련하고자 할 경우 이 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

**제3조 (적용범위)** 특정 연구 분야의 윤리 및 진실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의한다.

**제4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① 이 지침에서 제시하는 연구부정행위 (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는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6.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

② 연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행위 외에도 자체적인 조사 또는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정행위를 제7조제1항제1호의 내용에 포함시킬 수 있다.

## 제2장 연구기관과 연구지원기관의 역할과 책임

**제5조** (연구 환경 및 연구관리 제도의 개선)

① 연구기관은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연구 환경과 연구실 문화를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연구지원기관은 연구비의 배분 및 관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 (연구윤리에 대한 교육)

① 연구기관은 연구자가 연구 수행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 규범, 부정행위의 범위, 부정행위에 대한 대응 방법 및 검증 절차 등에 관하여 소속 연구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구지원기관은 연구기관의 연구윤리 교육에 필요한 자료의 개발 등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 (연구기관의 자체검증체계 마련)

① 연구기관은 이 지침의 내용을 기초로 기관 실정에 적합한 연구진실성 검증에 관한 자체규정을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1. 부정행위의 범위
2. 부정행위 신고 접수 및 조사 등을 담당하는 기구, 부서 또는 책임자
3. 본조사의 수행을 위한 위원회 (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 등 검증기구 구성 원칙, 조사 절차 및 기간
4.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의 종류
5. 제보자 및 피조사자 보호방안

② 자체규정은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외에도 연구기관이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모든 연구개발사업 등을 적용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제8조** (연구지원기관의 권한과 역할)

① 연구지원기관은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부정행위 신고 접수창구를 마련하고, 연구기관의 진실성 검증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심사하며, 이를 토대로 연구협약에 근거하여 후속조치를 실시한다.

② 연구지원기관은 연구윤리의 정착 및 연구진실성의 제고를 위하여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원 등에 있어 인센티브 또는 불이익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③ 연구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연구진실성 검증을 위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연구기관의 예비조사결과 또는 판정결과에 대해 제기한 이의신청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재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2. 연구기관의 판정결과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어 재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3. 해당 연구기관에서 조사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4. 연구기관으로부터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의 수행을 요청받은 경우

**제9조** (제보자의 권리 보호)

① 제보자는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해당 연구기관 또는 연구지원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② 제보자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 경우 연구기관 및 연구지원기관은 이를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연구기관 및 연구지원기관은 제보자가 부정행위 신고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니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제보자가 신고를 이유로 제3항의 불이익을 받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될 경우 제보자의 소속기관과 함께 제보의 접수와 검증에 관계된 연구기관 및 연구지원기관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⑤ 제보자는 부정행위의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고자 할 경우 제보 접수기관 또는 검증기관에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⑥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0조**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① 피조사자는 제보 또는 연구기관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연구기관 및 연구지원기관은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부정행위에 대한 혐의는 판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1조제3항 각호의 사항이 발생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경우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④ 피조사자는 부정행위 조사·처리절차 및 처리일정 등에 대해 제보접수기관 또는 검증기관에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제3장 연구진실성 검증 절차와 기준

**제11조** (진실성 검증 책임주체)
① 부정행위의 발생을 인지하거나 제보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검증 책임은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 연구기관에 있으며, 해당 연구기관의 장은 제7조의 자체규정에 의해 성실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연구지원기관이 부정행위의 발생을 인지하거나 부정행위에 대한 제보를 접수한 경우에는 해당 연구기관에 의해 자체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이관하여야 한다.
③ 연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따라 자체조사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연구지원기관에게 직접 조사를 수행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연구지원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2개 이상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한 연구에서의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2.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활동 규모 및 전문가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자체조사를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지원기관이 직접 조사를 수행한 경우에 해당 연구기관도 조사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조사 결과는 해당 연구기관의 관련 규정에 의해 처리되어야 한다.

**제12조** (진실성 검증 시효)
①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② 5년 이전의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피조사자가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후속 연구의 기획 및 연구비의 신청,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에 사용하였을 경우와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3조** (진실성 검증 원칙)
① 부정행위에 대한 혐의를 입증할 책임은 해당 연구기관과 조사위원회에 있다. 단, 피조사자가 조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였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 요구자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할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②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③ 연구기관의 장은 조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진실성 검증 절차)
①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는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단계로 진행하여야 한다.
② 각 연구기관은 제1항의 검증 절차 외에도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절차를 포함시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15조** (예비조사)
① 예비조사는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예비조사기구의 형태는 연구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다.

② 예비조사 결과 피조사자가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경우에는 본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으며, 증거자료에 대한 중대한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위원회 구성 이전에도 해당 연구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제19조제2항의 증거자료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예비조사에서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한다. 단, 익명제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④ 제보자는 예비조사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연구지원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16조** (본조사)

① 본조사는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본조사결과에 대해서도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③ 본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는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17조** (판정)

① '판정'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②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조사 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조사기관은 연구지원기관에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연구지원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연구지원기관은 이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재조사를 직접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 (조사위원회 구성 원칙)

① 조사위원회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구기관의 실정과 부정행위의 규모·범위 등을 고려하여 다른 형태의 검증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조사위원회 또는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검증기구에는 해당 연구 분야의 전문가 및 해당 연구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인이 다음 각 호와 같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구 분야의 전문가 50% 이상
2. 해당 연구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인 20% 이상

③ 연구기관은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19조** (조사위원회의 권한)

①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해당 연구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제한, 해당 연구자료의 압수·보관 등을 할 수 있다.

③ 조사위원회는 해당 연구기관의 장에게 사실로 판정된 부정행위에 대하여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20조** (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

① 조사를 담당한 기관은 조사 과정의 모든 기록을 음성, 영상, 또는 문서의 형태로 반드시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연구지원기관도 조사결과 보고서를 10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② 조사결과 보고서 및 조사위원 명단은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조사기구의 독립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조사과정에서의 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21조** (조사결과의 보고)

① 연구기관은 예비조사 및 본조사의 결과와 내용을 예비조사의 종료 및 판정 후 각각 10일 이내에 연구지원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제8조 제3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지원기관이 직접 조사를 담당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3. 조사위원회의 조사위원 명단
4.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예비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5. 관련 증거 및 증인 (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6.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7.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③ 연구기관은 조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연구지원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보고받은 연구지원기관은 즉시 관계기관에 보고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을 위반한 경우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그 밖의 연구지원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22조** (조사결과 보고에 대한 후속조치)

① 연구지원기관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경우 조사내용·결과 및 그에 따른 판정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연구기관의 장에게 추가적인 조사의 실시 또는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연구지원기관은 연구기관의 판정결과 또는 제8조제3항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연구협약에 근거하여 해당 연구자에 대한 연구비 지원 중단, 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등 후속 조치를 취하고 이를 해당 연구기관과 피조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 (특별조사위원회)

①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내에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할 수 있다.

1. 국가적 현안으로 대두되어 범정부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
2. 2개 이상의 연구지원기관이 관련된 연구개발과제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결론 도출이 어려운 사안
3. 부정행위에 연구지원기관이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어 해당 연구기관이나 연구지원기관 차원에서 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사안

②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부 칙

① 이 지침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제2조제1항의 대상기관 중 별표에 해당하는 기관은 이 지침이 제시하는 원칙과 기준을 토대로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연구 윤리의 제고 및 진실성 확보를 위한 자체규정과 진실성 검증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별표> 지침에 따라 자체규정 및 검증체계를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기관

| |
|---|
| 1.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연구관리전문기관<br>2. 정부출연연구기관<br>3. 최근 3년간 연평균 100억원 이상의 연구개발사업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대학 ('05년 말 기준 총 27개) |